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15. 8. .

행 정 자 치 부
(창조행정담당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국장급과 과장급 직위 중 일부를 조정하고, 소속기관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등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제4항제7호 중 “공약·지시사항(장관 지시사항은 제외한다)”을 “공약·지시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14항에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온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31.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감독

32.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관리

제11조제1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의 “정부서울청사관리기준”을 “정부청사관리기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같다.”를 “같으며, 다만,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행정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지방행정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4명(3·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2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41조제4항 중 “같으며,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1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1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44조제1항 중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공공서비스정책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국제행정협력담당관”으로, “보존연구과장·기록정보기반과장 및 정부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장·경남청사관리소장”을 “보존연구과장·기록정보기반과장, 정부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장·경남청사관리소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이버안전과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과장·약독마약분석과장”으로 한다.

별표 2중 행정사무관 “143”을 “142”로, 행정주사 “103”을 “104”로, “사무운영서기보 27”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속기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속기담당) “2”를 “1”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중 “행정서기보 3”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하고, 통신운영서기보 “2”을 “1”로 한다.

별표 4의2와 별표 5의2와 별표 6의2, 별표 7의2 및 별표 9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공무원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8급 2명과 9급 10명의 정원은 2017년 0월 0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7급 23명, 6급 26명은 2017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0월 00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7급 3명, 8급 18명, 9급 28명으로 본다.

[별표 2의2]

행정자치부공무원정원표(제40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84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7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2
비서(6급 상당)	2
비서(7급 상당)	1
비서(8급 상당)	1
일반직 계	839
고위공무원단	2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서기관	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142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5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전산사무관	24
시설사무관	7
행정주사	104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4
행정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행정주사·사서주사·전산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2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7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9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전산주사	32
전산주사 또는 세무주사	2
방송통신주사	2
공업주사	1

시설주사	11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행정주사보	26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3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전산주사보	13
시설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15
전산서기	3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
행정서기 또는 세무서기	1
행정서기 ·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10
운전서기보	7
기록연구사	1
통신운영주사보	1
사무운영서기	1
사무운영서기보	27
전문경력관 가군(속기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서훈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국회협력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서훈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1
경정	1

[별표 4의2]

<u>지방행정연수원공무원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u>	
총계	102
일반직 계	102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7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8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
행정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전산주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사서주사	2
공업주사	2
시설주사	1
간호주사	1
행정주사보	12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행정서기	7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2
방호서기보	1
기계운영주사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3
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기자재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체육교육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교육과정 담당)	1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4

[별표 5의2]

국가기록원공무원정원표(제41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321
일반직 계	321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연구직 또는 임기제(대통령기록관장)	1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
서기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
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1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전산사무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5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7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8
사서사무관 · 시설사무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사서사무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
사서사무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공업사무관 · 학예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4
행정주사 · 사서주사 · 전산주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65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5
사서주사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
사서주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사서주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공업주사 · 학예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공업주사	3
시설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2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9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0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
전산주사보	2
임업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8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4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운전서기보	6
위생서기보	1
조리서기보	1
방호서기보	4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기계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보	11
사무운영서기보	4
전문경력관 가군(대통령기록물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보존매체수록 담당)	1

[별표 6의2]

정부청사관리소공무원정원표(제41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711
일반직 계	711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
기술서기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공업사무관	7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방송통신사무관	3
시설사무관	10
방호사무관	1
행정주사	19
행정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5
공업주사	9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방송통신주사	12
임업주사	3
시설주사	15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7
의료기술주사	3
의료기술주사·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3
간호주사	4
방호주사	6
행정주사보	10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
공업주사보	10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14
시설주사보	11
임업주사보	3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의료기술주사보	1
의료기술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
간호주사보	1
방호주사보	21
행정서기	19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5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1
간호서기	1
운전서기	1
방호서기	21
임업서기	2

행정서기보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281
통신운영주사	2
기계운영주사	1
농림운영주사	2
건축운영주사보	2
통신운영주사보	5
전기운영주사보	4
기계운영주사보	3
건축운영서기	1
통신운영서기	5
전기운영서기	3
기계운영서기	2
통신운영서기보	5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5
기계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4
농림운영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12
전문경력관 가군(방호 담당)	2
전문경력관 가군(체력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기계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체력관리 담당)	5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관리 담당)	4

[별표 7의2]

정부통합전산센터공무원정원표(제41조제4항 단서 관련)

총계	281
일반직 계	281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0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사서주사·전산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7
전산주사	5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7
전산주사보	4
행정서기	7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2
전산서기	3
행정서기보	7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9의2]

이북5도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41조제5항 단서 관련)

총계	44
정무직 계	5
도지사	5
별정직 계	5
비서(7급 상당)	5
일반직 계	34
서기관	5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5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공업주사	2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행정서기	3
운전서기보	6
방호서기보	2
열관리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생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u>17. 장관 지시사항의 관리 및 그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u>	<u><삭 제></u>
18. ~ 23. (생략)	18. ~ 2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4.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u>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각종 <u>공약 · 지시사항(장관 지시사항은 제외한다)</u> 의 관리	7. ----- <u>공약 · 지시사항</u> ----- ----- --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행정실) ① ~ ⑬ (생략)	제11조(지방행정실)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지역발전과장은 다음 사항	⑭ -----

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으며,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4명(3·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2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정부청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지방행정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4명(3·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2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_____

_____.

<단서 신설>

④ 정부통합전산센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1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다만,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4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
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
다.

④ ----- 같다. 다만, 「행
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정부통합
전산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다.

⑤ _____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후단 신설>	----- . 다만,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 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4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제49조에서 “행정자 치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 란 감사관, <u>국가기록원 기록정 책부장, 정부통합전산센터장</u> 을 말한다.	① ----- ----- ----- ----- <u>공공서비스정책관,</u> <u>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국가</u> <u>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정부통합</u> <u>전산센터장, 국립과학수사연구</u> <u>원 법공학부장</u>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u>정보통계담당관, 개인정보</u> <u>보호정책과장, 지방세특례제도</u> <u>과장, 지방행정연수원 국제교육</u> <u>협력과장, 국가기록원 보존연구</u> <u>과장·기록정보기반과장 및 정</u> <u>부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u> <u>장·경남청사관리소장</u> 은 임기	② ----- ----- ----- <u>국제행정협력담당관</u> --- ----- ----- <u>보존</u> <u>연구과장·기록정보기반과장,</u> <u>정부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u> <u>소장·경남청사관리소장, 정부</u>

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u>통합전산센터 사이버안전과장,</u> <u>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u> <u>사과장·약독마약분석과장</u>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별표 2]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표(제4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851	851	
·	·	·	
·	·	·	
일반직 계	841	841	
행정사무관	<u>143</u>	<u>142</u>	-1
·	·	·	
행정주사	<u>103</u>	<u>104</u>	+1
·	·	·	
전문경력관 가군(속기 담당)	<신 설>	<u>1</u>	+1
·	·	·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u>2</u>	<u>1</u>	-1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총계	103	103	
일반직 계	103	103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신 설>	<u>1</u>	+1
·	·		
통신운영서기보	<u>2</u>	<u>1</u>	-1